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(안 제7조의2, 제104조)

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,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일괄입찰”을 “일괄입찰,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”로 한다.

제104조 본문 중 “예정가격”을 “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,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) ① (생략)	제7조의2(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: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<u>일괄입찰</u>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	1. ----- ----- -- <u>일괄입찰,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</u> ----- 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04조(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)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<u>예정가격</u>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(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	제104조(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,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</u> --- -----

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)을 선정 한 후 제102조제 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. 다만, 제103조제3항에 따 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 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 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213